

2026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하반기 추가모집 과정 안내

<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> ☎ 042) 520-5279

□ 주요사항

- 교육비 및 교재비는 100% 본인부담
- 교육 신청 시간은 교육 신청 시작 당일 오후 9시(21시)부터 가능
- 각 과정별 최소 30명 이상 시 개설

□ 교육 방법

- 비대면 실시간 화상 강의(Zoom)

□ 교육 대상

- 장기미종사자 전국 대상
- 보육교사 일반직무, 대전 지역만 신청 가능

구 분	교육 대상	교육 시간	비고
일반직무교육	장기미종사자	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	40시간 - 이수하고자 하는 자 - 전국 대상
	보육교사	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 교육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, 단)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 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	40시간 - 매 3년마다 - 대전 지역만 신청 가능

□ 교육 일정

[I . 2026년 하반기]

교육과정명			정원 (명)	교육 시간		교육 기간	신청 기간	선정 기간	승인 기간	집합(대면) O·T 및 면제 과목 서류제출일	교육비	교재비	교육비+ 교재비	교육비 납부 기한
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ZOOM	장기미 종사자 직무 교육	5기	150	40시간 10일	18:00~21:30 (월~금) 야간	10.26(월)~ 11.06(금)	9.14 ~ 10.10	10.12~ 10.14	10.15 ~ 10.16	비대면 오리엔테이션 10.22(목) 19:00 승인 후 ZOOM 회의 아이디 문자 공지	80,000원	20,000원 + 택배비 3,500원	103,500원	9.14 ~ 10.17
		6기	150			12.07(월)~ 12.18(금)	10.12 ~11.1 9	11.23~ 11.25	11.26 ~ 11.27					10.12 ~ 11.28
		보육 교사 일반 직무	8기	150	28시간 17일	18:00~21:30 (월~금) 야간	11.12(목) ~ 11.20(금)	9.14 ~ 10.30	11.02 - 11.04	11.05 ~ 11.06	대면 오리엔테이션 및 면제 과목 서류 제출 11.11(수) 18:30	80,000원	20,000원	100,000

□ 일반안내

구 분	내 용
교육 신청 방법 [교육 신청 시 본인 전화번호 꼭 확인 요망!!! / 오류 시 교육과정 안내 문자 전송 불가]	○ 위 신청 기간에 반드시 [보육교직원통합정보] 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☎ 교육원 전화, 방문 신청 불가 ○ 현직·비현직 교직원 - 교육생 직접 신청 : [보육교직원통합정보] 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 [교육 선택] → [교육 신청] 클릭 후 → 순서에 맞춰 작성 ※ 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께서 신청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[보육교직원통합정보]에서 신청 ※ 교육 절차 : 신청(본인) → 선정(해당 자치구) → 승인 (대전시청) → 교육과정 안내(보육교사교육원)
보수교육 과정별	※ 교육비 입금 : 교육과정명 줄임 약자 + 기수 + 수강생 본인 성명 [예시 : 보기본2홍길동] → 교육비, 교재비, 택배비 (개별 입금)

구 분		내 용																					
교육비 및 교재비 입금 계좌		※ 교재 :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은 비대면 택배 발송,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은 오리엔테이션 시 배부																					
		<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> ○ 계좌번호 : 국민은행 918001-01-397496 / ○ 예금주 : 배재대학교(보수교육)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h colspan="2">과정명</th><th>입금자명</th><th>교육비</th><th>교재비</th><th>합계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직무 교육</td><td>장기 미종사자 교육</td><td>장미자(홍길동)</td><td>80,000</td><td>20,000원+택배비(3,500원)</td><td>103,500원</td></tr><tr><td>보육교사 기본</td><td>보기본(홍길동)</td><td>80,000</td><td>20,000원</td><td>100,000원</td></tr></table>					과정명		입금자명	교육비	교재비	합계	직무 교육	장기 미종사자 교육	장미자(홍길동)	80,000	20,000원+택배비(3,500원)	103,500원	보육교사 기본	보기본(홍길동)	80,000	20,000원	100,000원
		과정명		입금자명	교육비	교재비	합계																
직무 교육	장기 미종사자 교육	장미자(홍길동)	80,000	20,000원+택배비(3,500원)	103,500원																		
	보육교사 기본	보기본(홍길동)	80,000	20,000원	100,000원																		
기타 유의 사항		○ [영유아보육법]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2, 제39조의4에 준함 ○ 보수 교육과정 교과목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름 ○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○ 기타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[2026년 보육사업 안내] 지침에 따름 ○ 개인 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신청 기간 마감 2일 전에 [보육교직원통합정보]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대기자 교육 신청 가능																					
교육기관 전화문의		○ 교육기관 :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(☎ 042-520-5279, 042-520-5166/ E-mail: teacher@pcu.ac.kr/ 홈페이지[www.ecct.kr] ○ 전화문의 : 오전 (10시~12시) / 오후 (13:00~18:00)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기관		○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절차 오류 시 문의처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(1566-3232) ○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☎ 042-270-0692 ○ 동구청 ☎ 042-251-4536 / 중구청 ☎ 042-606-7204 / 서구청 ☎ 042-288-3236 / 유성구청 ☎ 042-611-2381 / 대덕구청 ☎ 042-608-6974																					
교통편 안 내	시내 버스	○ 시청 방면(216번, 원내동~시청), 엑스포공원 방면(301번, 봉산동~동물원), 유성 방면(312번, 목원대~장수마을). 서부터미널 방면(916번, 만년동~서부터미널), 대전역 방면(612번, 대전대~배재대 종점) 대전역 방면(603번, 대전대~서대전여고 하차 ⇒ 배재대 도보 10분). 보문산 방면(619번, 동신고~서대전여고 ⇒ 배재대 도보 10분).																					
	승용차	○ 내비게이션 기준 →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/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-40 하워드기념관 (배재대학교) ○ 승용차로 오실 때 교내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 본인 부담비 발생																					

□ 2026년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과정 운영 방침

1.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28시간 운영 기준

- (1) 일반직무교육 기본과정 중 교육과정 28시간 신청 시, ‘교육부 일반 직무교육 인정 과정’ 사전 이수 필수
- (2) 필수 1 : [교육부 보수교육 인정] 온라인 교육 (탑재형 콘텐츠, 해당 교육과정) 12시간 이수
- (3) 필수 2 : [교육부 보수교육 인정] ‘집합(또는 실시간 화상) 교육 인정 과정’ 16시간 이수

※ 필수 1&2 인정 과정 이수 시간 합산하여 최대 20시간 인정 본 교육원 28시간 중 20시간만 이수
 [면제과목 : 아동학대 예방 교육,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(중재)]
- 예시 1] [‘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’ 인정 과정] 이수한 교육생 = 12시간 보수교육 인정
 ⇒ 본 교육원 교육 28시간 수강 필수
- 예시 2] [‘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’ 인정 과정] 12시간 + ‘집합(또는 실시간 화상) 교육 인정 과정’ 8시간 = 20시간 인정
 ⇒ 본 교육원 교육 20시간 수강 [아동학대예방교육,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(중재)] 면제
- 예시 3] { [안전공제회]+[아동학대예방교육]+[개정 표준보육과정] } 이수 완료 12시간+[‘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’ 인정 과정] 중 선택 교육 또는 ‘집합(또는 실시간 화상) 보수교육 인정 과정’을 이수 완료 8시간 인정 = 20시간 인정

⇒ 본 교육원 교육 20시간 수강 [아동학대예방교육,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(중재)] 면제
예시 4] 온라인 교육[안전공제회 포함 4시간 + 집합(또는 실시간 화상)교육 인정 과정' 16시간 = 20시간 인정

⇒ 본 교육원 교육 20시간 수강 [아동학대예방교육,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(중재)] 면제

▶ [교육부 보수교육 인정] 20시간 + 본 교육원 20시간 최종적으로 총 4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확정되어야 함

(4) 일반직무교육 시간표

→ 본 교육원 홈페이지 [www.ecctt.kr] 커뮤니티 공지 시간표 참조

□ 보수교육 인정 과정 운영 기준 안내 [교육부 운영 기준 해설]

1.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안내

※ '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반드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(온라인 탑재형 교육)'에서 이수해야 함.

○ 어린이집안전공제회 [보육교직원 안전교육]에서 기본과정, 심화과정, 영아담당교사과정 I, 유아담당교사과정 I, 놀이로 풀어가는 영아 안전교육과정, 놀이로 풀어가는 유아 안전교육과정, [6개 과정 중 1개 과정 수강 필수] 3시간 이수증 제출 시 보수교육 과정 「안전과 건강」 교과목 4시간 이수 인정

○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'아동학대 예방 교육 (실시간 화상교육, 3시간)'을 이수한 경우,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불필요, 3시간 이수증 제출 시 「아동학대 예방」 교과목 4시간 이수 인정(상기 교육 이수 불가 시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함)

2. 보육교사 일반직무 이수 인정 안내

○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총 40시간 중 '보수교육 인정 과정'을 이수한 경우 최대 20시간까지 인정

※ 단, '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인정 과정'과 '집합(또는 실시간 화상) 교육 인정 과정'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20시간까지 보수교육으로 인정

(1) 온라인 교육 [탑재형 콘텐츠,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최대 12시간 보수교육 인정]

- 필수 : [어린이집안전공제회]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보수교육 4시간 인정)

- 선택 : '아래 내용'을 선택하여 이수 완료하면 보수교육으로 최대 8시간까지 인정

▶ [한국보육진흥원] 4대 분야 연수

▶ '개정 표준보육과정' 관련 원격연수 또는 보육교사 연수 혁신 원격연수

(2)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[해당 교육과정 이수 최대 8시간 보수교육 인정]

- 필수 : [육아종합지원센터] 아동학대 예방교육 (보수교육 4시간 인정, 실시간 화상교육)

※ 다만, 상기 교육 이수 불가 시,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필수 (이수 시간은 '보수교육 인정 과정'에 포함하여 합산)

- 선택 : '아래 내용'을 선택하여 이수 완료하면 보수교육으로 12시간까지 인정

▶ [육아정책연구소 /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] 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보육교사 연수 혁신 교사학습공동체

▶ [한국보육진흥원, 시도교육청] 4대 분야 연수

▶ [한국보육진흥원, 육아종합지원센터]

'개정 표준보육과정' 관련 '찾아가는 연수 또는 컨설팅', (육아정책연구소) 교사학습공동체

▶ [공주대학교 교육연수원] 이음교육 역량 강화 연수

▶ [육아종합지원센터] 보육교직원 대상 각종 교육

▶ '고용노동부 보육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' 또는 '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(지방자치연구소(주)) 교육

[실적 인정 기간]

▶ '상기 인정 과정'은 '25년 11월 이후, 이수 실적에 한해 인정

※ 다만, '4대 분야 집합(또는 실시간 화상)교육'과 '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보육교사 연수 혁신 교사학습공동체'는 '25년 3월 이후 실적부터 인정

※ 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연수[육아정책연구소/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, 집합교육, 기존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]의 '24~'25년 이수자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해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/ '26년 미운영 해당 없음